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①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9.4.17일 既개정된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 · 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제1항 문구를 참조하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 2→제9조의 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 · 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 · 보완



포장과 법률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3.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명칭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명칭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 2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평가 관련 업무는 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 법 제9조의 3----- 한국 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제6조(기타) 운영기관은 재질·구조개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2022년 12월 30일-----.
<부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수정 내용 별첨>
<신 설>	[별표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붙임 참조>
[붙임] 페트병 포장재 관련 유형별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가이드라인	(삭 제)

[별표 1]

현행	개정안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본 원칙 가.~나.(생략)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본 원칙 가.~나.(현행과 동일)

현행	개정안
<p>〈신 설〉</p> <p>□평가기준 가. 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재활용 어려움)”로 구분</p> <p>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등급은 세부 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p> <p>다. (생략)</p> <p>라.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p> <p>마. 〈신 설〉</p>	<p>□용어의 정의</p> <p>가.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p> <p>나.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p> <p>다. “첩합(래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p> <p>라. “도포(코팅)”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물·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켈린더링·압출·담금(디핑)·분사(스프레이)·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p> <p>□평가기준</p> <p>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 -----.</p> <p>나.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 고,</p> <p>-----.</p> <p>다. (현행과 동일)</p> <p>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 ----- ----- -----.</p> <p>마. PSP, 페트병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1) 페트병에서 몸체,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p>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최우수/우수</td> <td>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td> </tr> </table>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p>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p> <p>※ 예시2) 페트병에서 몸체가 보통등급이면서 라벨이 최우수 등급인 경우 최종 등급은 “재활용 보통”에 해당</p> <table border="1"> <tr> <td>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td> <td>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보통)</td> <td>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td> </tr> </table>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 우수)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p>1. 종이팩 포장재</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th> <th>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th> </tr> <tr> <td>몸체</td> <td>●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td> <td>● 알루미늄 첩합 구조 ●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td> </tr> <tr> <td>마개 및 잡자재</td> <td></td> <td>● 분리가 불가능한¹⁾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td> </tr> </table> <p>1)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몸체나 마개 및 잡자재 등 재질의 손상 없이 제거가 어려운 경우</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 ●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잡자재		● 분리가 불가능한 ¹⁾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p>1. 종이팩 포장재</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th> <th>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th> </tr> <tr> <td>몸체</td> <td>●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td> <td>● 알루미늄 첩합 구조</td> </tr> <tr> <td>마개 및 잡자재</td> <td>● 미사용</td> <td>●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¹⁾</td> </tr> </table> <p>1)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¹⁾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투명필름 코팅·차단제 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 ● 미표백 펄프 사용(백색을 제외한 펄프를 사용한 제품)																									
마개 및 잡자재		● 분리가 불가능한 ¹⁾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팩	● 알루미늄 첩합 구조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¹⁾																									
<p>2. 유리병 포장재</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th> <th>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th> </tr> <tr> <td>몸체</td> <td>● 소다석회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색상</td> <td>● 소다석회 이외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¹⁾</td> </tr> <tr> <td>라벨</td> <td>● 종이라벨 또는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라벨</td> <td>●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라벨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또는 표면코팅 ● 금속재질</td> </tr> <tr> <td>마개 및 잡자재</td> <td>●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 가능한 마개</td> <td>●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마개 제외) ● 기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td> </tr> </table> <p>1) 와인병 등으로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의 경우도 포함</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소다석회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색상	● 소다석회 이외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¹⁾	라벨	● 종이라벨 또는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라벨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라벨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또는 표면코팅 ● 금속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 가능한 마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마개 제외) ● 기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p>2. 유리병 포장재</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th> <th>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th> </tr> <tr> <td>몸체</td> <td>● 무색, 갈색, 녹색 색상</td> <td>●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¹⁾ ● 몸체에 표면코팅(Hot코팅, Cold코팅, 플라스틱 코팅 제외) 또는 도색</td> </tr> <tr> <td>라벨</td> <td>●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td> <td>●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금속혼입재질</td> </tr> <tr> <td>마개 및 잡자재</td> <td>●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td> <td>●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기타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td> </tr> </table> <p>1) 와인병 등으로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의 경우도 포함</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무색, 갈색, 녹색 색상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¹⁾ ● 몸체에 표면코팅(Hot코팅, Cold코팅, 플라스틱 코팅 제외) 또는 도색	라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금속혼입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기타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소다석회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색상	● 소다석회 이외 재질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¹⁾																									
라벨	● 종이라벨 또는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라벨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라벨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또는 표면코팅 ● 금속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 가능한 마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마개 제외) ● 기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몸체	● 무색, 갈색, 녹색 색상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¹⁾ ● 몸체에 표면코팅(Hot코팅, Cold코팅, 플라스틱 코팅 제외) 또는 도색																									
라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금속혼입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 뚜껑·테 분리형 구조 ● 코르크, 금속성 물질의 잡자재 ● 기타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①

현행			개정안		
3. 금속캔 포장재(철캔)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금속 철캔	● 납땜캔	몸체	● 금속 철캔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알루미늄 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생략)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현행과 동일)		
5. 일반 발포합성수지 ¹⁾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5. 일반 발포합성수지 ¹⁾ 단일 · 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 ● 백색 이외의 색상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 백색 이외의 색상(검은색 EPE, EPP 재질은 보통 등급)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 ²⁾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에 직접 인쇄 ²⁾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 ·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완충제를 말함.			1) 발포합성수지라 함은 발포폴리스티렌(EPS),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 · 복합재질, 발포합성수지 단일 · 복합재질 완충제를 말함.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2)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6.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 ● 기타 재질과의 첩합 및 조합 ● 백색 이외의 색상	몸체	● 백색 단일재질	● 복합재질 구조(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 백색 이외의 색상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분리가 용이한 라벨 · 마개 · 잡자재 최우수 :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 다른 재질의 마개 · 잡자재로서 제거 · 분리 가능한 구조	● 몸체에 직접 인쇄 ¹⁾ ● 몸체와 다른 재질의 라벨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미사용 또는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최우수 : 몸체와 동일한 재질 우수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분리 가능한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¹⁾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 PVC 계열의 재질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1)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의 경우 재활용 우수		



현행			개정안		
7. 페트병 포장재			7. 페트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재질 무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 ●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먹는샘물 · 음료의 경우 녹색도 제외) ● 기타 재질과의 접착 및 철평 등 복합재질에 의한 구조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재질 무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 먹는샘물 · 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 먹는샘물 · 음료의 경우 유색 ● 복합재질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취선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¹⁾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최우수 : 비접(점)착제 우수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²⁾ 단, 접(점)착제 도포시 면 · 양 최소화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단, 절취선 등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제외)⁴⁾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PVC, 종이라벨, 금속훈입라벨 사용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¹⁾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최우수 : 비접(점)착제 또는 이에 준하는 라벨²⁾ 우수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³⁾ 단, 접(점)착제 도포시 면적 · 양 최소화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⁵⁾ ※ 비중 1이상의 라벨 사용 시 몸체와 같은 페트 재질 사용을 권장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간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 ●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훈입재질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무색 페트 단일재질 제외) ● 합성수지 이외의 마개 및 잡자재 ● PVC 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 ● 실리콘, 고무, 금속 재질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 손잡이의 경우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페트 단일재질을 제외한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단, 뚜껑, 몸체 모두와 완전분리가 가능한 잡자재의 경우 제외)⁶⁾
<p>1) 2열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제거 안내 문구 및 가장자리 미도포 등 라벨 형식에 따라 도입 가능한 형태로 분리 용이성 제고(단,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외)</p> <p>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5~9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p> <p>3) 페트병 유형별 가이드라인 별첨</p> <p>4)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또는 어려운 재질 · 구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p>			<p>1)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단,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 제외)</p> <p>2)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경우</p> <p>3)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p> <p>4)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면적의 60% 이하인 경우</p> <p>5)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p> <p>6)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p>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①

현행			개정안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우수 재질 · 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 구조
몸체	● 단일재질 ¹⁾	● PVC 계열의 재질	몸체	● 단일재질(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	● 글리콜 변성 PET 수지 (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 유색 PET 재질 ● PVC 계열의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 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몸체가 PET 재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비접착식 ※ 접착식 또는 직접인 쇠 미사용 권장1) 몸체가 PET 이외 재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몸체에 직접 인쇄 - 몸체와 동일한 재질 ²⁾ - 몸체와 다른 합성수 지 재질로서 몸체와 완 전분리가 가능한 경우 ³⁾	몸체가 PET 재질 ● PVC 계열의 재질 몸체가 PET 이 외 재질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1) PE · PP용기 포장재의 경우 몸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 포함할 수 있음			1)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에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 (PE, PP 등) 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동일한 재질로 허용(예시 : 몸체가 PP, 라벨이 PP+PE인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 3) “몸체와 완전분리”란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이 남아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 소비자에게 몸체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삽입 권장		
9.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 및 단일 ·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9. 복합재질 용기 · 트레이 및 단일 · 복합재질 필름 · 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다음호에 계속〉